

[붙임]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전문 내용에 따른 지표안 개발 결과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6	(a) 국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따라 검토하고,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및 개정	·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및 개정	6-a-1.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회적 장애 개념 반영 여부	·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개념을 사회적 개념으로 채택,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에 사회적 개념을 포함하여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정성	핵심	보건 복지부
		· 미등록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의 수립	6-a-2. 미등록 장애인을 위한 법률과 정책 마련 여부	· 미등록 장애인(ex: 시청각 장애인 등)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는 법률, 정책,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수립하여 다양한 장애의 개념을 인정하여, 등록 유무를 기준으로 장애를 한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장애의 개념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현행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미등록 장애인(ex: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정성	보충	보건 복지부
	(b) 장애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는 것과 자립생활 및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장애판정제도를 다시 설정할 것	· 장애판정제도를 장애 의학적 모델에서 장애 인권적 모델로 대체 · 장애판정제도 등이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 파악을 가능하도록 재설정	6-b-1.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ICF에 근거하여 환경적 맥락속에서 장애를 파악하는 질문 비율 6-b-2.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에서 사회 환경적 맥락을 파악하는 질문 비율	· 장애판정제도가 ICF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가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정도판정 질문 항목 중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 항목 수 ÷ 장애정도판정 전체 질문 항목 수) × 100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질문 항목 중 법적 환경적 맥락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된 질문 항목 수 ÷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전체 질문 항목 수) × 100	정량	핵심	보건 복지부
	(c)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료, 보건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직군에게 협약상의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공공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료, 보건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직군의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수	6-c-1. 관련 전문직군의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수 비율	·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료, 보건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직군이 협약상의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자 수 ÷ 중앙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판사, 검사, 교사, 의사, 간호사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100	정량	핵심	보건 복지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에 협약상의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내용 반영 여부 평가 시스템 마련 	6-c-2.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평가 시스템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에 협약상의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정성	보충	보건 복지부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 할 것을 권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8-1.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로 확인 	정성	핵심	법무부
10	위원회는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와 관련된 일반논평 제7호(2018)를 상기하고, 당사국이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 간성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장애인과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단체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 할 것을 권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메커니즘 강화 	10-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연령, 성, 정체성, 장애유형, 이주장애인 등 다양성 고려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구성 시 장애아동·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여성·난민과 이주장애인 등 장애 유형·정체성·단체 유형 등을 고려한 모든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수 + 전체 위원 및 실무위원 수) × 100 	정량	핵심	보건 복지부
12	(a) 기존의 차별금지법,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 및 연령, 성별, 인종, 민족성, 성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어떠한 다른 지위에 기반한 교차적인 차별을 인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 재검토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a-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여부 12-a-2.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12-a-3. 장애인이 직면하는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 종식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수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금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 관련 차별 사항을 반영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 차별 종식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정성	핵심	보건 복지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b)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협약과 일치하도록 검토하여, 심리사회장애인의 보편적 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 심리사회장애인 포함	12-b-2. 심리사회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수립 여부	·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국가 수준의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c)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폐소한 장애인을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부담에서 면제시키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보상 제도(변제 방법)를 보장할 것;	·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폐소 장애인에 대한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 면제, 추가적 비용·행정적 부담 방지 방안 및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보상 제도 마련	12-c-1.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폐소 장애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면제 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보상 제도 실시 여부	· 국내 소송비용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폐소한 장애인이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소송비용 또는 면제 지원 관련 방안, 원칙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정성	핵심	법무부
	(d) 합리적 조정(=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장애에 기반한 차별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보고의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할 것	· 협약에 근거한 합리적 조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간 정합성 준수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 마련	12-d-1. 국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편의와 협약에 근거한 합리적 조정 간 일치 여부 12-d-2.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 마련 여부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와 장애인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제6호에 따른 합리적 조정 간 일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 차별 시정 기구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사건 발생시 적용되고 있는 조사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별도의 효과적 조사 즈거 마련 필요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1안(반영 비율 확인): (정당한 편의에 규정된 지원 항목 수 ÷ 협약 및 일반논평에 따른 합리적 조정 대상 지원 항목 수) × 100 · 2안(일치율 확인): (합리적 조정과 정당한 편의 간 일치하는 항목 수 ÷ 협약 및 일반논평에 따른 합리적 조정 지원 대상 항목 수) × 100	정량	핵심	보건복지부
14	(a)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8)과 장애 관련 아젠다 등, 장애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모든 젠더 범률에 주류화하고, 젠더 관점을 장애정책과 프로그램에 주류화하며, 젠더 및 장애 관련 법과 프로그램 기획 및 이	·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8) 등 젠더 관련 정책 및 젠더 관련 범률 내 장애여성·소녀의 권리 포함 · 장애관련 정책 계획(6차 장애인종합계획 등) 내 장애	14-a-1. 국내 젠더 관련 정책 내 장애여성·소녀 권리 보장 내용 포함 여부 14-a-2. 국내 장애 관련 정책 내 장애여성·소녀	·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8) 등 국내 젠더 관련 정책 내 장애여성·소녀를 포함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 보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8) 등 국내 대표적 장애 정책 내 장애여성·소녀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	정성	핵심	여성가족부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행에 있어 장애여성과 소녀의 협의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여성·소녀의 권리 포함 · 젠더 관련 법률 중 장애여성·소녀 권리 보호 사항 포함	권리 보장 내용 포함 여부 14-a-3. 젠더 관련 법률 중 장애여성·소녀 권리 보장 내용 반영 비율	녀를 포함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 보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국내 젠더 관련 법률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립·시행 여부로 확인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소녀 권리 보장 내용 포함 젠더 관련 법률 수 ÷ 젠더 관련 법률 수) × 100	정성	핵심	여성가족부
	(b) 일반적인 장애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성평등 관점에 입각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수립되도록 보장할 것	장애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및 예산 수립	14-b-1.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 및 예산 반영 여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등 국가 수준 장애인 정책 내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정책 과제 수립 및 예산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c) 법률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할 것;	·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사항 반영 ·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14-c-1.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장애 관련 법령에서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14-c-2.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 수립, 관련 정책 내 반영 여부, 별도의 국가 전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장애 관련 법령에서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 수립, 관련 정책 내 반영 여부, 별도의 국가 전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d)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역량강화와 완전한 참여, 모든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당사국은 장애여성이 정치영역 의사결정 역할에서 대표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정치 영역에서의 장애여성의 대표성 보장	14-d-1. 주요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 도입 여부	·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관련 정책 수립·시행 또는 정당별 당현·당규 개정 여부로 확인	정성	핵심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	(a) 장애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장애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	· 장애아동의 참여권 보장 체계 구축	16-a-1.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 참여권 관련 사항 규정 여부	·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장애아동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의 참여권(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하여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한다.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장애아동 참여 보장	16-a-2.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장애아동 참여 보장 근거 마련 여부	사률 존중받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족부
	(b)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재활프로그램 개발로 가정생활, 공동체생활 등 생활 모든 분야에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 아동 관련 지역사회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장애아동 지원 사항 포함	16-b-1.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	· 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등 국가 수준의 지역사회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과제 수 ÷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수) × 100 *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목록 정리 필요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보충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c)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검토하여 모든 장애아동이 놀이터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17-c-1. 통합놀이터 설치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여부	·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정성 핵심	행정안전부
18	(a)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전략 채택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18-a-1. 장애인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여부	· 장애인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장애인의 인식 제고와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b)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집행관, 언론,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혹은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제고 모듈을 모든 교육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도입하여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공무원, 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교육 실시	18-a-1.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비율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자 수 ÷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공무원, 교사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 100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확인 필요		정량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과 능력 및 기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20	(a) 건축물의 규모, 수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 보장 의무규정을 포함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한다.	· 국내법 내 건축물 규모, 수 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접근성 보장 및 관련 의무 사항 규정	20-a-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관련 법령에서 건축물 내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마련 여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 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 · 개정 여부로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폐커니즘을 강화한다.	·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접근 성 전략 마련	20-b-1. 국가 접근성 전략 채택 여부	· 접근성 관련 협약의 각 조항(제5조 ~ 30 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접근성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c)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에서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수를 늘리고, 버스 번호, 노선을 포함한 정보와 탑승 안내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되도록 보장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공공장소와 환경을 개선한다.	·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시외 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확충	20-c-1.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	·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의 휠체어 이용 가능 저상버스 도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 버스 중 저상버스 수 ÷ 시외버 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수) × 100	정량	핵심	국토교통부
			20-c-2.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버스 정보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국토교통부
			20-c-3. 휠체어로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정보 제공 여부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 휠체어로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국토교통부
		· 버스 번호, 노선 등 버스 이 용 및 탑승 안내 정보를 음 성, 수어 또는 읽기 쉬운 형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 한 형식으로 제공	20-c-4. 음성 및 읽기 쉬운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여부	· 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시 등 장애인의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국토교통부
		·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 스 터미널 또는 버스정류장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환경(이동편의시설 등 확보)을 갖	20-c-5.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등의 버 스 정류장 및 터미널이 휠체어로 탑승이 가능한 환경(이동편의시설 등 확보)을 갖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정 류장 및 터미널 수 ÷ 시외버	정성	핵심	국토교통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22	(d) 모든 장애인, 특히 교육시설과 가정 모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보장한다.	환경 조성	버스터미널 환경 조성 여부	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 수) × 100			
		· 교육시설에서의 시각장애인에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 보장	20-d-1. 교육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 보급 비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 접근 가능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장애인이 원하는 형태의 디지털기기 지원 비율 포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교육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 교육시설 내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시각장애인 수) × 100	정량	핵심	교육부
		· 가정 내 시각장애인에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 보장	20-d-1. 각급학교의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장애를 고려한 편의제공 지원 근거 마련 여부	·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업에 사용하는 영상물이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 통역 등 장애를 고려한 편의지원을 포함하여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보충	교육부
		· 가정 내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프로그램 포함) 보급 비율	20-d-2. 가정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프로그램 포함) 보급 비율	· 가정 내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재가 시각장애인 수) × 100	정량	핵심	방송통신위원회
22	(a) 장애인단체 통해 장애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긴밀히 협의 할 것을 보장 받으며 자폐 당사자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안 모색하고 정신장애인 및 가족들을 위한 장애인 국가자살 및 실종예방 전략을 이행시키고 채택 할 것	·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 예방 정책 수립 및 이행	22-a-1.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	·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자살 예방 정책 수립 및 이행	22-a-2.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	·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 정책 수립 및 이행	22-a-3.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	·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22-a-4. 관련 정책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수렴 등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여부	·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수렴 등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b)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과 지	·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 생	22-b-1. 감염병, 재난 등	· 감염병, 재난 등의 위험 상황 대응 매뉴	·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재난유형	정성	핵심	보건복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부처
	역사회 차별 생활을 보장받고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및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긴급 탈시설을 시작하는 조치를 개발할 것	명권 보호를 위한 긴급 탈시설 조치	위험상황에서의 긴급 탈시설 조치 계획 채택 여부	열이장애인 생명권 보호를 위한 긴급탈시설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별 위기관리 매뉴얼 등에 긴급 탈시설 조치 포함 여부 확인			지부
24	(a)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 장애여성,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감각장애인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재난위험경감 계획 채택을 가속화 할 것	·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재난위험경감 계획 채택	22-b-2. 긴급 탈시설 조치 계획, 이행, 모니터링에서 장애인단체 및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협의 여부	· 감염병, 재난 등의 위험 상황에서의 긴급 탈시설 조치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및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협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감염병, 재난 등의 위험 상황에서의 긴급 탈시설 조치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및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협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협의체 구성 여부 - 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 비율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b) 재난위험경감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목표 11, 13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차원의 모든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기획하고 이행할 때 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	· 장애 포괄적 국가 재난위험경감 조치 마련 · 국가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대응 계획·기획·이행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24-a. 재난위험경감계획 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포함 여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재난 위험 상황을 경감시키기 위한 계획에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행정안전부
26	(a)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프로그램에서 팬더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대처하고 백신을 등등하게 보급 받을 있는 권한을 포함시키고 대책방안 그리고 코로나 19 대응에 장애 주류화 시킬 것	·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 내 장애 주류화	24-b.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 및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장애인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행정안전부·환경부	
	(b) 비상시에 장애인 탈시설 방안 채택하고 지역사회에서 거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공	·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26-a.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 내 장애인 지원 관련 내용 포함 여부	·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26-b-1.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여부	·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할 것		마련 여부					
	(c) 모든 단계에 코로나19 대응 이행과 대책 방안을 발전시키고 장애당사자와 장애인단체 포함 시킬 것	·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 개발·이행 과정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26-c.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 개발·이행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근거 마련 여부	·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 개발·이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근거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d)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보장하며 모든 장애당사자가 접근 가능한 형식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위기상황 및 긴급사태 발생 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를 적절한 기기로 제공	26-d. 위기상황 및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를 적절한 기기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여부	· 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를 적절한 기기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28	(a) 후견제와 피후견제를 포함한 대체의사결정제도를,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교체할 것	· 후견제와 같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장애인의 자율성·의지·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 추진	28-a-1.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 여부	· 장애 관련 정책(계획)과 민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한 정책(계획)이 있는지, 민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에 대체 의사결정제도 내용을 삭제하거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법무부
	(b)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지원 메커니즘에 관한 개혁 절차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훈련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행, 법제·개정 과정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 보장	28-a-2.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	· 장애인에 대한 특정후견,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성년후견인의 수 ÷ 전체 장애인 후견인 수) × 100	정량	보충	법무부
			28-b. 의사결정지원 제도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이행 및 법령 제·개정 과정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후견제도 등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행 및 법제·개정 과정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한 정책(계획;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참고), 민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에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이행 과정에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정성	핵심	법무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서
	(c) 지원의사결정에 관한 점자, 수어 및 읽기 쉬운 형태와 같은 접근가능한 형태의 정보의 개발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배포할 것	· 지원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한 형태(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 등)로 지원의사결정 관련 정보 제공 여부	28-c. 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한 형태(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 등)로 지원의사결정 관련 정보 제공 여부	· 지원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게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에 지원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정성	핵심	법무부
30	(a) 협약에 따라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제한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같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 장애인의 사법 접근에 대한 실행 계획 채택	30-a-1.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 수립 여부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법무부
		· 장애인의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 마련	30-a-2. 장애인의 사법 절차에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령, 정책의 존재 유무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법무부
	(b) 장애인이 다양한 측면의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별화된 지원의 제공을 포함한 절차적 조정을 마련할 것	·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 체계 구축	30-b-1. 다양한 법적 절차에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된 지원 체계 구축 여부	· 장애인의 법적 절차 참여 과정에서 장애인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 등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법무부
	(c) 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Easy Read)와 음성 및 화면해설 등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모든 법정 시설에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도록 접근가능한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 마련	30-c-1.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 마련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여부	·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정성	핵심	법무부
		·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법정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30-c-2. 모든 법정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물리적	· 모든 법정시설을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구체적인 이행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법무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이행계획 수립	접근성 보장 계획 수립 여부	계획(정책, 지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d) 협약에 관한 훈련을 법관과 사법 종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법관 및 사법 종사자 대상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에 관한 적절한 훈련 제공	30-d-1.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 여부 30-d-2. 법관 및 사법 종사자의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이수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에게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 중 장애인 사법 접근권에 관한 교육을 실제 이수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법무부
	(e)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마련할 것	· 장애인이 차별없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별화된 지원(정당한 편의제공) 제공	30-e-1. 법학적성시험(LEET) 및 변호사시험 장애인응시자 중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 경험 비율 30-e-2.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 제도를 실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	· 법학적성시험(LEET),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중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요구한 정당한 편의에 대해 제공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개별화된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1회 이상 장애인 사법접근권 교육을 받은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 100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시 거부 당한 경험이 있는 법학적성시험 및 변호사 시험 응시 장애인 수 ÷ 법학적성시험 및 변호사 시험 응시 장애인 수) × 100	정량	보충	법무부
32	(a) 인식되는 자타해위협과 손상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 민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들을 폐지하고, 비차별적인 법률(예를 들어, 심문 및 구금 시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편의)을 제정하고, 손상에 근거하여	· 자타해 위협과 손상 등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 폐지 · 심문 및 구금 시 장애인에게 절차적 편의제공 등을 반영 한 비차별적 법률 제정	32-a-1. 장애인 비자의적 자유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모든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여부 32-a-2.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비차별적 법률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 비자의적 자유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모든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비차별적 법률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지 여부 확인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심리사회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시킬 것	·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 시설화 명시적 금지	사항이 반영된 비차별적 법률 마련 여부	·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 · 입원한 장애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 · 입원한 장애인 수 ÷ 전체 시설 또는 병원 입소 · 입원 장애인 수) × 100	정량	보충	보건복지부
	(b) 심리사회적장애 및/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	· 격리치료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32-b-1. 심리사회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인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	·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법무부
			32-b-1.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 수 ÷ 격리치료시설 수용자 수) ÷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수 ÷ 격리치료시설 수용자 수)}	정량	보충	법무부
34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향정신성 약물과 신체적 억압의 사용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a) 사법, 교육, 건강, 심리사회 및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 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이 과정에 협의하고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 모든 시설적 환경에서 약물,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 굴욕적 대우 등에 필요한 즉각적 조치 채택	34-a. 모든 환경에서 고문 및 잔虐한, 비인간적,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장애인 보호 및 예방 조치 채택 여부	·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b) 여전히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여부 및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여부 및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34-b-1.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여부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시설 인권침해 중 거주인 진정 비율 및 후속조치 이행 비율제시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부처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제재하여 그 행위에 비례하는 처벌을 부과하라.	있는 제재와 처벌 조치 마련	34-b-2.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현황 34-b-3.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시설 내 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진정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 조사 및 제재와 그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미처벌 사례) 확인 <p>※ 다음 측정산식 활용 $\cdot (\text{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 진정 사건 수} \div \text{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수}) \times 100$</p>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36	(a) 장애인을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 특히 심리 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시설 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장애인이 학대상황을 피하고 인식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할 것과 착취, 폭력 및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고 재활을 포함하여 보상 및 충분한 배상과 같은 적절한 구제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시설 안팎으로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 및 시행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분리된 통계를 수집할 것 (c) 지원센터 및 응급쉼터를 포함하여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서비스가 접근 가능할 것과 제공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과 배포상 구제방안을 포함하는 전략 채택 ·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현황 및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마련 · 시설내외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a. 장애인 학대피해 생존자의 재활 및 배포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예방 전략 수립 여부 36-b-1.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근절 계획을 채택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36-b-2.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 여부 36-c-1.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쉼터를 포함하여 별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과 배포상 구제방안을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36-c-2.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수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또는 쉼터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젠더기반 폭력 피해 생존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지원센터 수 합계	정량	보충	여성가족부
	(d) 장애당사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차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고 폭력 피해 장애인들과 더 나은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	·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 대상 장애인학대 인식 및 폭력 피해 장애인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실시	36-d.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의 모든 형태의 학대를 인식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비율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를 인식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 수 ÷ 전체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 수) × 100	정량	핵심	보건복지부
38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장애여성과 여아,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식별, 조사 및 추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며, 강제 불임수술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보상 제공	38.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여부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여성가족부
40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장애이주민의 입국과 장애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적 조항 폐지	40. 장애이주민의 입국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 법령 또는 정책 폐지 여부	· 장애가 있는 이주민의 입국과 장애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지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법무부
4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조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와의 동참'(2017)과 긴급상황 시를 포함한 위원회	·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일반논평, 탈시설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여 기존 "탈시설	42-a. 협약 제19조,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협약,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는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 · 보완 여부 및 수정 · 보완 내용의 협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p>의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시키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p> <p>(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도록 한다.</p> <p>(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도록 한다.</p>	<p>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보완</p>	<p>근거한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 · 보완</p>	<p>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p>	<p>약, 일반논평제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p>			
	<p>· 아동장애인을 포함한 탈시설 전략 이행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증감 현황</p>	<p>42-b.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증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탈시설 전략 이행 강화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text{당해연도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 \text{전년도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div \text{전년도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times 100$ 		정량	핵심	보건복지부
44	<p>(a) 텔레비전과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정보에서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와 정보통신 기술에서 장애인의 다양성에 적합하도록 접근을 보장한다.</p>	<p>· 텔레비전과 미디어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정보에서 모든 장애인의 접근 보장</p>	44-a-1. 공중파 텔레비전 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파 텔레비전의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text{당해연도 고시 의무 비율} - \text{전년도 고시 의무 비율}) \div \text{전년도 고시 의무 비율}\} \times 100$ 	정량	핵심	방송통신위원회
			44-a-2.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text{웹접근성 준수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수} \div \text{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수}) \times 100$ 	정량	보충	행정안전부
			44-a-3.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의 접근 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중 읽기쉬운자료, 점자, 보이스오버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text{장애인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판물 수} \div \text{전체 정부 및 공$ 	정량	보충	행정안전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비율		공기관의 출판물 수) × 100			
		·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 보장	44-a-4.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인터넷 이용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수) ÷ (인터넷 이용 국민 수 ÷ 전체 국민 수)} × 100	정량	핵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a-5.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스마트폰 이용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수) ÷ (스마트폰 이용 국민 수 ÷ 전체 국민 수)} × 100	정량	핵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a-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수 ÷ 전체 키오스크 수) × 100	정량	보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b) 읽기쉬운/이해하기 쉬운 콘텐츠와 그외 커뮤니케이션 접근 형식, 방법과 수단을 통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 읽기쉬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접근 형식, 방법, 수단 등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44-b.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 장애인이 방송 콘텐츠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방송통신위원회
46	(a) 특히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신경다양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GPS추적장치를 당사자의 동의 하에 발부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위치 추적을 위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	46-a.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	·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b)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되게 실종예방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는 실종 예방 정책 마련 여부	46-b.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는 실종 예방 정책 마련 여부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는 실종 예방 정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48	(a) 장애 여성, 지적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48-a.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802조, 제804조(약혼),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개정 여부 확인	정성	핵심	행정안전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의 책임을 수행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법률 개정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 여부	동법 제808조, 제804조(혼인), 동법 제873조, 제887조, 제894조, 제898조, 제902조, 제906조(입양) 등의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b) 장애인 가족이 가족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한다.	·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마련	48-b.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여부	·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50	50. 통합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논평 제4호(2016년)와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4.5를 목표로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PD/C/KOR/CO/1, para. 46)를 반복하고 당사국에 촉구한다. (a) 교육 요구 사항 및 필요한 편의 시설에 대한 개별화 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을 포용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	·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일반교육 정책 수립	50-a-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교육부
	50-a-2.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	· 일반학교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 수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 수) × 100	정량	핵심	교육부		
	·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 및 교사 외 학교 구성원 대상 교육 지원	50-a-3.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	·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운영 역량 증진을 위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통합교육 연수 이수 일반교육교원 수 ÷ 전체 일반교육교원 수) × 100	정량	핵심	교육부	
	·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50-b.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교육부	
	(c)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유치원 재원 장애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관련 법	·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유치원 재원 장애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보장한다.	50-c.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여부	·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도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지원을 보장하여 재원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담보하고 있는지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교육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령 및 정책 마련		확인하기 위한 지표				
52	52. 협약 제25조와 지속가능개발 목표 3.7, 3.8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 (CRPD/C/KOR/CO/1, para. 47)를 반복하며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상법 제732조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서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와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상법 제732조 완전 폐지 · 여성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52-a-1. 상법 제372조 완전 폐지 여부 52-a-2.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52-a-3.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상법 제732조 완전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여성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률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 ·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폐지 여부 확인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이용자 수 ÷ 가임기 장애여성 수) × 100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정신장애인 수 ÷ 전체 정신장애인 수) × 100	정성	핵심	법무부
	· 보건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조치, 정보,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 개발 · 점자, 수어, 읽기 쉬운 버전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 제공	52-b-1.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부 52(b)-2. 국민 대상 건강 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 보건관련 종사자(의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련 정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수 ÷ 전체 건강 정보 수) × 100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활과 재활 체계를 확대할 것과 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각자의 필요에 기초하여 가활과 재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른 가활과 재활 접근 보장	54-1.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적과 체류 상태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여부	· 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른 가활과 재활 접근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56	56. 위원회는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22)를 상기하며, 지속가능발	· 장애인을 개방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법률 폐지	56-a-1. 직종 관련 법률 내 장애유형을 이유로 직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직종 관련 법률 내에 장애유형을 이유로 직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직업 관련 법령 중 장애유형을 근거로 한 제한 조항 반영 법령 수 측정	정량	핵심	고용노동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서
	<p>전목표 제 8.5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p> <p>(a) 장애인을 개방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 및 노동 및 고용과 관련한 권리, 특히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에 관한 차별 시 제재 조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공고, 채용절차, 합리적 편의제공, 재훈련, 승진에 관한 차별 시 제재 조치 마련 	56-a-2. 현행 법령 내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법령 내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에 장애포괄적(차별 제제)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 관련 법률에 장애포괄적 조치 여부 확인 	정성	핵심	고용노동부
	<p>특히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에 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도입할 것</p> <p>(b) 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에 대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보장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 여부 	<p>56-b-1.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비율</p> <p>56-b-2. 최저임금 배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에 대한 동일 가치 동일 보수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전체 임금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 ÷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 × 100 	정량	핵심	고용노동부
	<p>(c) 장애인, 특히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이 개방노동시장에서의 노동 및 고용 및 통합적 노동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 장애인의 일반노동 시장 참여 보장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반 노동시장 내 지원 체계 구축 지적, 청각, 정신 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보장 지적, 청각, 정신 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p>56-c-1.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p> <p>56-c-2.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p> <p>56-c-3.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p> <p>56-c-4. 일반노동시장 내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일반노동시장 내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최근 5년 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피고용인 수 ÷ 전체 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피고용인 수) × 100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지적, 청각, 정신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피고용인 수 ÷ 전체 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피고용인 수) × 100 	정량	보충	고용노동부
						정성	핵심	고용노동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여부					
	(d)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개방되고 통합적임 접근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를 포함해 특별 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작업장이 아닌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장애인 및 장애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마련 	<p>56-d-1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비율</p> <p>56-d-2.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증대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여부</p> <p>56-(d)-3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장애여성 의무고용 할당 비율 도입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여부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p>※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보호작업장 내 근로 장애인 수(근로자+훈련생) ÷ 전체 장애 노동자 수) × 100</p> <p>·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p> <p>·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p>	정량	핵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8. 장애상태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통합증진과 역량강화를 모색할 지속가능발전 목표(SDG)의 세부목표 10.2와 장애인권리협약 28조 간의 연관성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및 빈곤경감계획 강화 장애인단체들과 논의 하에 장애수당 액수 검토 	<p>58-a-1.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 마련 여부</p> <p>58-a-2.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빈곤율</p> <p>58-a-2. 장애인단체와의 논의를 통한 장애수당 액수 검토 체계 구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및 빈곤경감계획을 강화했는지 확인하는 지표 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장애인단체들과 논의 하에 장애수당 액수 검토 	<p>· 국가 장애인종합계획상 장애인빈곤경감계획 비교, 장애인 빈곤율 통계 확인하여 제시</p> <p>※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의 빈곤율 ÷ 전체 국민의 빈곤율</p> <p>· 장애수당 등 관련 민관 협의체 (장애인단체 포함) 확인하여 제시</p>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58	(a)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및 빈곤경감계획을 강화하고, 장애인단체들과의 논의 하에 장애수당 액수를 검토할 것		58-b-1.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b)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의 완전폐지를 통해 장애인연금제도의 수급자격을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도록 보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전히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확대 및 모든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수급 보장 	58-b-2.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p>※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 등록 장애인 수) × 100</p>	정량	핵심	보건복지부
	(c) 장애이주민, 장애난민이 기초 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과 같	· 장애이주민, 장애난민이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등과 정책 상 기초생활수급,	58-b-3. 관계법령 및 정책 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	· 장애이주민, 장애난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즉각 조치	장애인 등 수급 대상에 장애이주민, 장애난민 포함 여부	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즉각적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60	(a) 장애인 권리를 부정하는 모든 차별적 법령을 폐지하고,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장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적극 보장	60-a.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중앙선 거관리 위원회
	(b) 선출대표 등을 포함해 농인, 지적/심리사회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장애여성 등을 포함한 소외된 장애인 그룹들의 평등과 참여를 보장하고, 입후보한 장애인후보자, 특히 소수정당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	·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 정치 활동 보장 · 소수 정당 입후보 장애인 지원 조치 마련	60-b-1. 장애유형,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도 마련 여부 60-b-2. 소수정당 입후보 장애인 후보자 지원 조치 마련 여부	· 장애유형,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소수정당 입후보 장애인 후보자 지원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중앙선 거관리 위원회
	(c) 선거o투표절차와 시설, 온라인/인쇄 선거자료들이 평이한 언어, 읽기 쉬운 형태로 접근 가능해, 모든 장애인들이 이런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및 강화	60-c.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여부	·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중앙선 거관리 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긴밀한 자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장애인, 특히 장애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 체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마라케시조약 이행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62-1.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제작 비율 62-2.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데이지 도서 제작 정부 및 지자체 예산 62-3. 마라케시조약 이행을 위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여부 62-4. 문화생활 향유를	· 어문출판물 중 점자, 녹음, 데이지도서로 제작되는 출판물의 비율을 통해 마라케시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텍스트 데이지 자료, 전자점자도서, 전자책 제작 수 ÷ 어문 출판물 발행수) × 100 · 텍스트 데이지 자료, 전자점자도서, 전자책 제작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통해 마라케시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마라케시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프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텍스트데이지자료, 전자점자도서, 전자책 제작 수 ÷ 어문 출판물 발행수) × 100 · 텍스트 데이지 자료, 전자점자도서, 전자책 제작 예산 확인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량 정량 정량 정성	핵심 보충 보충 핵심	문화체 육관광 부 문화체 육관광 부 문화체 육관광 부 문화체 육관광 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부처
	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보장	위한 지원 프로그램 수 62-5. 장애인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이용률	로그램의 개수를 통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하는 조치를 확인하는 지표 ·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률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지표	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문화생활 프로그램 수 합산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문화생활 참여 장애인 수 ÷ 전체 등록장애인 수) × 100 * 문화생활 범주 개발 필요			육관광부	
64	64. 위원회는 장애에 대한 위성 턴그룹질문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 장애인의 포용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정책마커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별로 분리된 장애인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절차를 신속하게 개발한다. 시스템과 절차는 장애인의 비밀유지와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한다.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별로 분리된 장애인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절차의 신속한 개발	64-a-1.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통계 수집 여부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통계 수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 통계청
	(b) 장애인의 권리 이행을 막는 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산을 할당한다. 당사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 수행 예산 할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 수행 역량 구축	64-b-1.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 64-b-2.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의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	·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연구 개발 예산 합계) × 100 *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필요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개발 예산 합계) × 100 *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필요	정량	핵심	행정안전부
	(c)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	·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조치	64-c-1. 중앙정부의 연간	· 중앙정부의 연간 장애인권리 연구 개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정량	핵심	행정안전부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해 수행된 장애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알리기 위해 양적 및 질적 방법 모두의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연구를 지원한다.	를 알리기 위한 양적 및 질적 방법의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연구 지원	장애인권리 연구 개발 예산 중 민간 연구기관(연구자)에 지원한 예산의 비율	예산 중 민간 연구기관(연구자)에 지원한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권리 관련 연구 개발 예산 중 민간 개인 또는 기관 지원 예산 합계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권리 관련 연구 개발 예산 합계) × 100			전부
66	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다루는 지방지역 체계에서 인천전략 포함하여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행에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협의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발과 이행	66-1. 국제장애인협력사업 지원 사업 수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국제장애인협력사업의 지원 사업 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도별 국제장애인협력사업 지원 사업 수 합계	정량	핵심	보건복지부
			66-2.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	· KOICA에서 집행하는 ODA 총 예산 중 장애특정, 포괄 프로그램 예산의 비율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 관련 분야 예산 합계 ÷ ODA 총 예산) × 100	정량	핵심	외교부
			66-3.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 KOICA의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의 개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의 개수 합계	정량	핵심	외교부
			66-4.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 KOICA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 합계	정량	핵심	외교부
			66-5.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 계획에 장애관련 내용 포함 여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하는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에 장애포괄을 위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외교부
			68-a-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횟수를 늘려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할 것;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횟수 확대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연도별 개최 횟수	· 연도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합계	정량	핵심
68	(b)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 소위원회의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적자원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과정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일 독립선출위원회 설치	68-b-1-1. 단일 독립 선출위원회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조항(제5조, 18조) 개정을 통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법률 개정 여부 확인	정성	핵심	국가인권위원회
			68-b-1-2. 국가인권위원회법 재정 자율성 확보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조항(제3조)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40조 준용한 독립기관으로 인정하고	· 해당 법률 개정 여부 확인	정성	핵심	국가인권위원회

번호	해당 내용(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법	지표 유형	소관 부처
	것.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69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협약 제6조와 제19조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여주길 요청한다.	· 협약 제6조 및 제19조에 대한 긴급한 정책 수립	69.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여부	·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7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은 현대 사회 소통 전략을 활용하여 정부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	· 정부의 최종견해를 정부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 대한 전달 및 조치	70. 정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	· 정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71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의 적극적 참여 보장	71.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포함 협의체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마련 여부	·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포함 협의체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를 수어를 포함한 자국어와 소수 민족 언어로, 읽기 쉬운 버전 등의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비정부 기구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널리 배포하여 인권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 최종견해를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	72. 최종견해를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 여부	· 최종견해를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정성	핵심	보건복지부